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3

제출년월일 : 2010. 3.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수수료 등 납부방법을 현금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 확대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관계 지침 폐지 및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해 발급이 폐지 또는 신설된 수수료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금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 발급이 폐지된 사실확인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무료화에 따른 수수료 조항 삭제(안 별표1)
 - 부양사실 증명 : 400원/통
 -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원 : 500원/통
 - 지방세 납세증명 : 800원/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화진흥 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처리하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이관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수수료 조항 신설(안 별표 1)
 - 영화업자 신고 수수료 : 20,000원/건
 - 영화업자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건
 - 영화업자 신고증 재교부 수수료 : 5,000원/건
 -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건
 -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건

- 소음·진동규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 및 신고 수수료 신설(안 별표1)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 수수료 : 10,000원/건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수수료 : 5,000원/건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 신고 수수료 : 없음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4. 기타 참고자료 : 별 첨

- 덧붙임 :
1.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기타참고자료(관계 법령 및 공문)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 중 1)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제2호 나목 “문화공보관계”에 17)부터 2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17) 영화업자 신고	1건	20,000원	
18) 영화업자 변경신고	1건	10,000원	
19) 영화업자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20)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21)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별표 1의 제2호 다목 “보건사회관계”를 “보건환경관계”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에 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24) 소음·진동배출시설 가) 설치허가신청	1건	10,000원	
나) 설치신고	1건	5,000원	
다) 변경신고	1건	없음	

별표 1의 제2호 라목 중 4)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징수방법) ① (생략)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u>현금으로</u> 징수한다</p> <p>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등에 관하여는 감면대상에 서 제외하고 정보공개수수료에 대 한 감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1. ~ 4. (생략) ② (생략)</p>	<p>제5조(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u></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u>각 호의</u> <u>어느 하나 -----</u>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별표 1]	[별표 1]

구분	기준	수수료
1. 증명		
<u>나. 본적, 주소, 신상에 관한 증명</u>		
1) 부양사실 증명	1통 (생략)	400원 (생략)
다. ~ 바. (생략)		
사.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납세증명	1건당 (생략)	800원 (생략)
2) (생략)		
자. ~ 차. (생략)	(생략)	(생략)

구분	기준	수수료
1. 증명		
<u>〈삭제〉</u>		
<u>〈삭제〉</u>		
다. ~ 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 -----		
〈삭제〉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 ~ 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관계공문 사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실확인서발급지침 폐지 통보

-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266(2007.1.25.)호와 관련입니다.
- 사실확인서발급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 2001.7.20)은 타부처의 업무를 행정자치부 예규로 관리 운영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으로 민원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04.1.16 사실확인서발급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지침 폐지에 협의하였습니다.
- 지침폐지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폐지 협의일('04.1.16)로 부터 3년여 경과한 07.2.28일자로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을 폐지함을 3개월전('06.12.27)에 관련 부처 4개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지침폐지일 전에 해당 부처에서 근거규정 등을 안내 받아 적법하게 사실확인서 관련 민원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부처 및 연락처

구 분	관계부처		전화번호	비 고
	부처명	담당부서		
부양가족사실확인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정책2과	02-2100-8088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	농림부	축산정책과	02-500-1900	
독자사실확인	병무청	현역입영팀	042-481-2734	
무적자사실확인	법원행정처	호적과	02-3480-1487	

끝.

충청북도지사

수신자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청원군수, 보은군수, 익산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

★지방진료주사보

지방행정사무관

주민생활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주민생활지원과-681 (2007.01.26.) 접수 종합민원실-1356 (2007.01.29.)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6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739 /전송 043) 220-5577 / jys113@cb21.net / 공개

현 행			기 정 안		
2.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자정, 확인 등 가. (생략)	(생략)	(생략)	2. ----- -----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문화공보관계 1) ~ 16)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생략)	(생략)	나. ----- 1) ~ 16) (현행과 같음) <u>17) 영화업자 신고</u> <u>18) 영화업자 변경신고</u> <u>19) 영화업자 신고증 제교부</u> <u>20)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u> <u>21)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u>	(현행과 같음) <u>1건</u> <u>1건</u> <u>1건</u> <u>1건</u> <u>1건</u>	(현행과 같음) <u>20,000원</u> <u>10,000원</u> <u>5,000원</u> <u>20,000원</u> <u>10,000원</u>
다. 보건사회관계 1) ~ 23) (생략) <u>〈신설〉</u>	(생략)	(생략)	다. 보건환경관계 1) ~ 23) (현행과 같음) <u>24) 소음·진동배출시설</u> <u>가) 설치허가신청</u> <u>나) 설치신고</u> <u>다) 변경신고</u>	(현행과 같음) <u>1건</u> <u>1건</u> <u>1건</u>	(현행과 같음) <u>10,000원</u> <u>5,000원</u> <u>없음</u>
라. 농수산관계 1) ~ 3) (생략) <u>4) 가축자기사육사실확인원</u> 5) ~ 11) (생략) 마 ~ 사 (생략)	(생략)	(생략)	라. ----- 1) ~ 3) (현행과 같음) <u>〈삭제〉</u> 5) ~ 11) (현행과 같음) 마 ~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삭제〉</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삭제〉</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우를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신고증·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0조 (수수료) ①(생략)

②(생략)

③다음 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1. 제36조제1항(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조례 기 반영)

1의2.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1의3.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조례 기 반영)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

관계법령 발췌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납세증명서 <개정 1999.12.31>) ①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09.9.21>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신설 2009.9.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7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제53조 (수수료)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9.6.9>

②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09.6.9>